

고시

제
전
조
결
장
전
결
사
규
의
함
호
정
항

기안자	기획예산과	전화번호	324	공보	필요	불필요
예산	예산과	내무	국장	제2	1부	시장
협조자	문	총무	과장	보	존	
서명	김	시정	과장	년	한	
기년	월	일	시년	월	일	통제관
분류기호	호	문서번호	서내기	1211.06		
경수참	유신조	내부결재		발신		
제 목						
196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재해구호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예산고시						
196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재해구호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(제2회)을 7.22자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었기 다음과 같이 고시함						
(고시안)						
서울특별시 고시 제 85호						
196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재해구호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						
1965. 7. 22						
서울특별시 장 윤 치 영						

7.24

8.24

7.24

서울특별시 고시 제 895 호

1965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재해구호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.

1965. 7. 23

서울특별시장 윤 치 영

회 계 별	추가예산액	기정예산액	금회추가액
일 반 회 계	3,891,615,100	3,886,315,100	5,300,000
재해구호사업비 특별회계	6,249,430	4,014,400	2,235,030
합 계	4,737,925,250	4,730,390,220	7,535,030

~~60~~

35-1

고시

기안용지
증상 **의문** **전결**

자 통 제 계	가 한 제	이 의 문 전 결	번호	근 거 서 류 점 수 일 자
주 청 계 장	농 림 과 장	신 영 3 과 장	제 1 부 과 장	시 장
관 제 관 서 명	법 제 계 시 장	농 사 계 장	전 결	
기 안 일 월	1961. 7. 28	시 행 일 월	61. 8. 29	5년
기 호	사 중 116. 53	제 호	제 호	제 호
정 수 합	내 부 결 재 (<u>간 아 합 조</u>) 발 신			
제 목	사 료 상 부 등 록 사 항 의 변 경 고 시			
(제 안) 사 료 상 부 등 록 고 시 제 883 호 (61. 4. 16자) 로 등 록 고 시 란 마 있 는 사 료 상 부 등 록 을 변 경 과 같 이 합 동 사 료 주 식 회 사 로 부 터 명 칭 의 변 경 개 시 신 청 이 있 어 이 를 검 토 하 고 사 료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제 8조 의 규 정 에 의 거 하 고 같 이 변 경 등 록 고 시 하 고 등 록 을 개 시 포 부 코 자 함 의 다.				
가. 변 경 등 록 사 항 (사 료 의 명 칭)				
고 시 번호	사 료 상 부 등 록 사 항	사 료 매 표 자	공 장 명 칭	변 경 사 항
사 료 번호	47	합 동 사 료	명 동 포 구	주 식 회 사 로 부 터 변 경 사 항
고 시 제 호	48	주 식 회 사	김 복 순	명 동 포 구 주 식 회 사 로 부 터 변 경 사 항
제 호	49			명 동 포 구 주 식 회 사 로 부 터 변 경 사 항
	50			명 동 포 구 주 식 회 사 로 부 터 변 경 사 항

3월 30일

의
인
제
3월 30일

10월 10일

증인양식 1-1-3

(1112-040-016-018)

(190mm x 260mm) 6페이지

고시사항 안
 서울특별시 고시 제 893호
 서울특별시 등기 변경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 893호로 고시된 서울특별시
 등기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한다.
 (부록 제 1안) 서울특별시 등기 변경 고시 사항이 기할 것)
 1965. 8. 5.
 서울특별시 시장 권치영

(제 3안)

수신	수신처 참조	발신	시 강
참조	산업과 강		
제부	등 건		

서울특별시 고시 제 893호로 고시된 서울
 특별 등기를 변경과 같이 변경 고시 하였기 양
 지하시기 바람
 처럼. 서울특별시 등기 변경 고시 문 1부.

수신처. 서칭 1-7.

(제 4안)

수신	수신처 참조	발신	시 강
제부	등 건		

증권특례법시 고시 제 883호로 고시한 사모증권
 변경과 같이 변경고시하였기 "보고" "통보"
 증권
 증권특례법시 고시 제 883호로 고시한 사모증권
 변경과 같이 변경고시하였기 "보고" "통보"
 증권

수신처. 응림부장관 나. 2-11.
 주식협동조합. 농업협동조합. 중앙사모주식회사.
 중앙증권사모회사. 대우사모공업사. 풍곡사모공업주식회사.
 시부사모공사. 영보사모공사. 한곡사모공사.
 대창사모공사. 건립기업주식회사. 동방협업주식회사.
 중앙사모공사.

(제 5안)
 수신 | 공보실장 | 발신 | 산업국장
 제목 | 동건
 변경과 같이 사모증권특례법을 변경고시 하
 였기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 증권. 사모증권특례법시 고시 제 883호로 고시한 사모증권
 변경과 같이 변경고시하였기 "보고" "통보"
 증권

(제 6안)
 수신 | 협동사모주식회사 | 발신 | 시강
 1. 2. 28자 사모증권특례법시 고시 제 883호로 고시한 사모증권
 변경과 같이 변경고시하였기 "보고" "통보"
 증권